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2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강승규 · 정성국 · 김용태

김상훈 · 서명옥 · 이달희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

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하거나 수리·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생 략)	의 책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				
	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u>한다.</u>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신 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				
	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 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 사 등) ① 설치자는 <u>제11조</u>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 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 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

	는	바이	따리) 휠	체어		장	애
	인 년	년조기	기기를	사용	용하는	: 사	·람.	의
	접:	<u> </u>	용이	하게	어린	이놀	· 6] ,	시
	설을	을 설	치하여	여야	<u>한다.</u>			
	<u>4</u>	국기	노 또	는 지	방자	치단	체	는
	제3	항에	따근	나 어	린이	놀이	시	설
	을	설치	하거	나 수	리 •	보수	하:	기
	<u>위 5</u>	하여	소요	되는	비용	우의	일.	早
	를	지원	할 수	있다	<u>}.</u>			
1	113	돈의2	(어린	이놀	이시설	널의	,	신
	고)	1		· <u>;</u>	제113	존제1	항-	
	2	• ③	(현행	과 길)음)			
1	123	존(어	린이늘	들이시	설의	설	え]	검
	사	등)	1		<u>제1</u>	1조기	स्री1	항

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 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 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 인받아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
③ ~ ⑤ (현행과 같음)